

본인확인서비스 가맹점 필수진행요청사항

하기 내용 필히 숙지 후 진행 요망

1. 필수 서류

- 접수 메일 : certcontract@kcp.co.kr
- 제출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뒷자리 마스크처리) 1부
 - ③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계약서 1부
 - ④ [별첨1]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 약정서 1부
 - ⑤ [별첨2] CI제공동의서 1부
 - ⑥ 거래처등록안내문 1부
 - ⑦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2. 본인확인서비스 무통장입금으로 요금 납부시,

- 서비스 신청후, 익일 18:00까지 입금 필수
-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요망(미준수시 입금 확인 불가)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47-054587-04-071 / * 예금주 :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 중복으로 입금 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결제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수)발행은 결제일자(입금일자) 발행일로 익월 초 발행됩니다.

3. 홈페이지 검수

- 신청한 홈페이지 정상 접속 여부 및 홈페이지 하단 정보 확인
홈페이지 하단에 1.상호명 2.대표 전화번호 3.사업자번호 4.대표자명 필수 노출 요망
- 홈페이지 구축 중이신 경우
접속 가능한 홈페이지 URL 재전달 또는 구축중인 홈페이지 하단정보 캡처 후 회신

※ 요청사항이 지연되는 경우 서비스 등록 또한 지연되며, 지연되는 일수에 대한 보상처리 불가

※ 희망개시일까지 요청사항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시 신청 취소 및 환불처리

이외의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1666-6410(1번)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실당량 : (이하 '갑')과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이하 '을')는 '본인확인서비스' 등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갑'에게 중개하여 제공하고 '갑'은 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확인서비스' 등 이라 함은 이) '이용자'가 '갑'의 사이트에서 '관련 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쳐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동통신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본인 여부와 등록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이하 '본인확인서비스')와 이) '갑'의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하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이용자'의 '대체수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이하 'B2B 본인확인정보 인증서비스')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고, '을'과 '본인확인서비스' 등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중개업무'라 함은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을'이 '갑'의 '사이트'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유지보수 하는 업무와 '이용자' 및 '갑'의 문의, 불분명사항에 대한 조치 등 '이동통신사'와 '갑', '이용자' 간 발생하는 Transaction 전반을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로서 '갑'의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이트'라 함은 '갑'의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PC Application 등 '갑'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6. '관련 약관'이라 함은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약관, '을'의 '본인확인서비스' 중개업무 및 개인정보 제공 관련 약관, '갑'의 '사이트'에서 제정, 운영하는 '본인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제공 관련 약관 등 본 계약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7.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하는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기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가입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여부에 필요하다고 '이동통신사'가 판단하여 정한 정보를 말한다.
 8. '대체수단'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암호화된 번호체계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세부 규격과 절차, 암호화 여부와 방식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른다.
 9. '시스템'이라 함은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등과 '을'의 '중개업무' 제공을 위하여 '이동통신사' 또는 '을'에 의해 개발·구축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10. '수수료'라 함은 '을'이 '갑'의 '사이트'와 '이용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중개업무'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갑'이 '을'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입력창'이라 함은 '이용자'가 '관련 약관'의 동의 및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의 사용 여부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일치 여부를 인증 받는 '사이트'상의 화면과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제반 응용 프로그램, 전문 등을 말한다.
- ②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약관, '을'의 '본인확인서비스' 중개업무 및 개인정보 제공 관련 약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갑'의 의무와 책임)

- ① '갑'은 '이용자'에게 '관련 약관'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자' 본인의 '본인확인정보'가 '을' 또는 '을' '이동통신사'로 제공되며 본인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가 '이용자'에게 발송됨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갑'은 본 계약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갑'의 시스템 등을 그 자신의 비용으로 구축, 운영,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사업자 정보 및 시스템 등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영업일 전에 '을'에게 해당 변경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갑'은 '을'의 사전 허락 없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등을 임의로 수정, 변경,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전자서명법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기타 '갑'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⑦ '갑'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식별정보인 'C'를 제공받기 위해 '별첨 2. C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서 상에 기입된 'C 사용 목적' 외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을'의 의무와 책임)

- ① '을'은 '본인확인서비스' '중개업무'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그 자신의 비용으로 구축, 운영,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관련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본인확인서비스' '중개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반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 및 '이동통신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통신사' 또는 '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본인확인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 제한)

- ① '을' 및 '이동통신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갑' 및 '이용자'에게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1.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기관' 자격의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확인서비스' 등의 중단
 2. '을'이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등 대행사 자격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중개업무'의 예고 없는 중단(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함)
 3.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용자' '본인확인정보'의 변경에 따른 정보 불일치 등의 사항
 4.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입단계에서 고의적인 '이용자'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타인명의 제공, 본인의 '본인확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위한 난수의 누설, 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확인서비스' 등의 부정확성 및 오류
 5. '본인확인정보' 자체의 일치 여부 확인 이외 다른 사유로 발생하는 '갑' 및 '이용자'의 불편, 장애 등
- ② 'B2B 본인확인정보 인증서비스'는 '갑'이 자신의 가입자/고객에게 가입 또는 재화나 용역 판매 시에 해당 가입자/고객에게 '본인확인' 용도로 '이동통신사'와 '을'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약관, 계약서 등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해당 가입자/고객을 본 계약상의 '이용자'로 간주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등' 제공시간)

- ① '본인확인서비스' 등의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이다.
- ② '을'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기점검,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을'은 '갑'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
- ③ '을'의 귀책사유 없는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을'의 '갑'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등

- '중개업무'가 중단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이동통신사'와 신속히 협의하여 '본인확인서비스' 등의 재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협의 상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본인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 ①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첨1.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약정서'에 따른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기본제공 건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별첨1.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 약정서"의 초과 요금 금액으로 산정하여 '을'이 '갑'에게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제공한 월의 [일월 10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수료를 청구하면, '갑'은 [청구월 20일]까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 ③ '갑'이 본 조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즉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수수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르기로 한다.
 1. '갑'이 '을'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월 및 이용 실적이 있는 월을 제외한 월의 이용료를 환불 하기로 한다.
 2. '을'의 장애(3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갑'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 발생 이전까지 서비스 이용 건수를 해당 월 기본제공 건수에서 상계 후 남은 기본제공 건수의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하기로 한다.
 3. '갑'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갑'이 기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 요청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 ①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제공을 중지 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 법령의 개정,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갑'이 본 서비스 계약 체결 또는 최종 거래 발생 이후 3월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 ② 전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10일 이내에 청구된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③ 양 당사자는 업무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상대방의 영업에 관한 자료,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담보의 제공)

- ①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동통신사'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 한다.
- ②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담보 금액, 담보 제공 방법, 담보 면제 여부, 기간 등 세부 조건은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12조 (양도 등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내용의 변경)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나 추가 약정서 체결을 통하여야만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제14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대표이사

(인)

을 :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NHN한국사이버결제
대표이사 박준석 (인)



(가)란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후 인감날인 후

[별첨 1]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 약정서”

■ 계약자 정보

사업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면세법인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 <input type="checkbox"/> 면세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사업자 정보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태				업종		
	연락처				사이트URL		
	주소						
실무자 정보	담당자 이름				부서 / 직급	/	
	연락처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개발정보	적용범위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 <input type="checkbox"/> 모바일웹 <input type="checkbox"/> 모바일앱(Android) <input type="checkbox"/> 모바일앱(iOS)					

■ 약정 사항

※ 부가세(VAT) 별도

서비스 구분	상품명	기본료				기본제공 건수(월)	건당 금액산정	초과 요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형	240,000	720,000	1,440,000	2,880,000	5,000	48	50
	중형	120,000	360,000	720,000	1,440,000	2,500	48	50
	소형	49,000	147,000	294,000	588,000	1,000	49	50
	최소형	25,000	75,000	150,000	300,000	500	50	50
비고								
합의 사항	1. 본 계약 기간 중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본 계약 상의 '수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에게 '수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사이에 전항의 수수료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의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수수료'정산 외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유효시간 내에 인증번호 미입력의 경우 '을'은 이용자에게 최대 3회까지 인증번호를 재전송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인증은 시도 기준이며, 기본제공건수를 해당월에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됩니다. (QR인증 및 PASS인증의 경우 최종 인증 성공시 건수로 집계됩니다.) 6. 서비스 만료월 말일까지 연장결제 하지 않을 경우 익월 1일 서비스 중단됩니다. 연장결제 시 과거 초과미납금이 존재할 경우, 초과미납금 결제 이후 연장결제가 가능합니다. 7. 해당월에 제공된 기본제공건수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초과요금으로 건당비용 과금되며, 익월 10일 세금계산서로 청구됩니다.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약정사항을 숙지하고 상기와 같이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을신청 합니다.

[별첨 2]

“CI(Connecting Information) 제공 동의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가맹점에서 개인식별정보인 CI를 제공받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가맹점에서 CI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입니다.

▣ 동의자 정보

사업자명				
사업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면세법인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 <input type="checkbox"/> 면세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사업자 정보	담당자 이름		사업자번호	
	연락처(유선)		휴대전화번호	
	사이트 URL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명			
CI 제공	CI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제공 동의		
	CI 사용 목적			

상기 정보와 같이 CI 제공에 동의하며, 위 CI 사용 목적 외 활용 시 CI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이사 :

(인)



거래처 등록 안내문 (사업자용)

저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당사와의 거래에 앞서 거래처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거래처 등록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담당자 날인 필요)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주체인 담당자의 서명 혹은 날인 필요. 정보 동의 여부 체크

[매입 · 매출 거래처 공통] 사업자 거래처 정보				<input type="checkbox"/> 개인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업태	
담당자 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된 서류는 거래처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작성서류와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貴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사업자용)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는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등 발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 사업자 정보 · 담당자 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세금계산서 및 제 증명 발급	거래 종료 시까지 단,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매입거래처에 한함)	대금 지급	

※ 귀하께서는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불가하며, 매입 거래처의 경우 대금지급을 적시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 번호 :

담 당 자 :

(서명 또는 날인)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貴中